

기자회견문 - 사건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대부분의 성폭력이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특히 교수성폭력사건의 경우 그 밑바탕에는 교수와 학생이라는 지위 차에서 발생하는 위계질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 권력의 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향로를 완전히 바꾸어버릴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것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문제제기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도교수와 학생사이의 관계에서는, 설사 성폭력적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교수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제기 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수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들이 보장되어야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피해자의 신변보호 문제가 분명하게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명확한 신고의 통로가 마련되어야 함은 기본적인 일일 겁니다.

이를 위해서 상당수의 대학들이 2000년도 즈음부터 대학 내 성폭력 사건들의 해결을 위한 각자의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99년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차별 시정 대상기관을 민간기업체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 금지 또한 명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에 따라 제시된 교육부지침에 의해 많은 대학들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차별·성폭력적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안(통칭 反성폭력학칙이라고 이야기되는)”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칙의 제정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학교 당국에 의한 강제력 있는 징계사항집행을 통해 가해자에게 자신의 가해사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식적인 사건 해결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학생, 교수, 교직원이라는 대학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칙이지만, 이를 통한 해결과정에 얼마만큼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분명 대학사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축 중 하나이지만,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학교당국의 인식으로 인해 온전하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 특히 교수성폭력 사건의 경우 주지한 바대로 교수와 학생사이에 존재하는 위계질서로 인해 피해자인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학별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시,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대책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일정 비율 이상의 참여는 명확한 규정으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대책위원회 구성의원 중 1/3이상의 비율로 그 참여는 보장되어야만 하며, 이와 같은 학생 스스로의 학습권 수호를 위한 권리주장을 학교 당국은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에, 학칙을 준비 혹은 완비한 모든 대학들은 실질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그 제도적 기반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대책위원회의 학생참여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학들은 더더욱 제대로 된 제도의 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 교수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에 대하여

우리들은 '교수 성폭력 뿌리 뽑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교육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쓸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라도 '교수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사회 문제로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교수 성폭력의 문제는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의 교수-학생 관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문제제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의 부재, 교수성폭력징계가 가능한 반성폭력 학칙의 부재,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대책의 부재와 그 밖의 문제들로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2차적인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조교 사건으로 알려졌던 신정효 교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정효 교수 사건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지난한 법정투쟁을 감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의 사정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침묵에서 외침으로>라는 제목 하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침묵하도록 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외치고자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수 성폭력 사건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은폐되어 왔습니다. 그 주 요인은 한국사회의 교수-학생 간의 관계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주로 대학원에서 일어납니다. 대학원 학생들이 교수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도교수와 지도학생 간의 관계에서 지도 교수가 가진 권력은 막강한 것이어서, 지도학생의 경우 성폭력을 당해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도교수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학생은 그간 쌓아왔던 학업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입히는 일이며, 따라서 가해자가 학교를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또한 교수 성폭력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교수를 통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수 성폭력의 문제는 우리 사회 성폭력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폭력이 명백한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성폭력 문제를 신고한 이후, 해결과정에서 무수한 이차적인 피해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인 진술을 요구하는 조사, 재조사 과정은 물론 피해자 책임론, 음모론 등의 어처구니 없는 여론을 견뎌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남기 어려우며, 대개는 밀실에서 행하여지므로 증인이 있는 경우 역시 적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무시해왔습니다. 이 것은 성폭력 사건이 남성중심적인 성폭력의 개념에 의해 판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학 내에서 교수를 처벌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것도 교수 성폭력 사건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수 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반성폭력 학칙이나 처리 기구가 없습니다. 교수 성폭력 사건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반성폭력 학칙은 반드시 제정 되어

야만 합니다. 또한 교수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학생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학생 대표가 참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내에서 상대적으로 권력 우위에 있는 교수가 사건의 가해자이니 만큼, 피해자가 학교 내에서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끊임없는 연대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수 성폭력의 문제는 다른아닌 학생들 모두의 학습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수 성폭력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 갈 것입니다.